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**2019. 7. 1.(월)** **총 4매(본문 4)**
담당 부처	국토교통부	**녹색건축과**	• 과장 김태오, 사무관 조광영, 주무관 권최남 • ☎ (044) 201-3768, 3772, 4753
	환경부	**생활환경과**	• 과장 성수호, 사무관 박은혜 • ☎ (044) 201-6790, 6798
	산업통상자원부	**기계융합산업표준과**	• 과장 정민화, 연구관 이경희 • ☎ (043) 870-5370, 5379
보 도 일 시		2019년 7월 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1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!

국토부-환경부 맞손,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-

◈ **30세대 이상 공동주택, 영화관, 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**

◈ **공기여과기(필터) 성능 현행 기준 대비 1.5배 강화**

◈ **52개 지하·철도역사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원 투입(2019)**

□ 앞으로 **30세대 이상 공동주**택에도 **환기설비 설치**가 **의무화**되고,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**공기여과기 성능**도 **강화**된다. 그리고, **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**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**991억 원**이 투입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**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**을 **마련**하여 추진 중이다.

○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**설치대상 확대**와 **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** 등의 내용을 담은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을 입법예고*(7.1~8.12) 중에 있다.

* 누리집(http://www.molit.go.kr)의 법령정보/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→
의견이 있는 경우 8.12일까지 우편, 팩스,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

□ 건축물의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.

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

○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·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**30세대 이상**의 **공동주택·주상복합 건축물**까지 **확대**한다.

※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·주상복합 건축물,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

○ 또한,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에 따라 '19.7.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*을 고려하여,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(1천제곱미터 이상), 어린이 놀이시설(430제곱미터 이상), 영화관(300제곱미터 미만) 등의 **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**가 **의무화**된다.

* (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) PM10 150 → 100 ㎍/㎥, PM2.5 50 ㎍/㎥(신설)
(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) PM10 100 → 75 ㎍/㎥, PM2.5 70 → 35 ㎍/㎥

②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

○ **기계환기설비**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**현행 대비 1.5배 강화**(입자크기 0.3㎛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%에서 **60%**로 강화)하고,

- **자연환기설비**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**현행 대비 1.2배 강화**(입자크기 6.6~8.6㎛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%에서 **70%**로 강화)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.

○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, 철도 대합실, 영화관, 도서관 등 **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**에

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(KS) 시험방법 기반의 **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**을 **도입**한다.

③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

○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**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**을 **마련**하고, 내년 시행(2020.5.1.)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.

○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**공기여과기 치수**를 풍량별로 **표준화**할 계획이다.

④ 기술 개발

○ **환기설비 성능 향상***과 환기설비 관련 **한국산업표준**(KS)을 **개정****하기 위한 **연구**도 추진하여 관련 **KS표준 개정**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.

* 주거용 건축물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(PM2.5, PM1.0) 센싱기술 및 IoT 기반의 스마트 환기설비 개발('19.7～'21)

** 환기설비 풍량별 치수 및 교체주기 정의(KS B 6141)와 필터, 열교환 소자 등 환기설비 주요 구성부품 성능 정비(KS B 6879)('19.7～'20)

⑤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 확대

○ 한편, 환경부와 국토부는 「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」(2018~2022)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**환기설비 신규 설치** 및 **노후 환기설비 교체**를 위한 **중점 투자**를 실시할 계획이다.

- 특히,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·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우선 전국 **52개 역사**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**991억 원**(본예산 40억 원, 정부 추경안 951억 원)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“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“새로이 개정된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조광영 사무관(☎ 044-201-37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